

평창 군관리계획(제2종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을 위한 군의회 의견 청취안

검 토 보 고 서

1. 회부경위

가. 제안일자 및 제출자 : 2010. 08. 03(화) 평창군수

나. 회부일자 : 2010. 09. 28(화)

다. 상정일자 : 2010.09.28(화) 제172회 평창군의회(정례회)
제2차 본회의

2. 제안이유

- 평창 설원 휴양콘도미니엄 제2종지구단위계획은 국민소득 수준의 향상에 따라 관광·여가활동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바, 대상지 인근에 휘닉스파크 스키장, 휘닉스파크 CC, 허브농장, 이효석생가 등 평창군내 주요 관광자원이 위치하고 있으며,
- 이러한 주변 관광자원을 중심으로 대상지 반경 500m내외에는 다수의 숙박시설(펜션 등)이 산발적으로 개발되고 있는 실정임.
- 따라서, 계획대상지를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 질적으로 향상된 휴양콘도미니엄 조성을 위한 충분한 기반시설의 확보 및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개발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28조 규정에 의거 『관광휴양형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제2종지구단위계획(안)』에 대한 군의회의 의견을 청취 하고자 함.

3. 주요골자

□ 제2종지구단위계획결정

○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 면적

기 정	변 경	증.감	비 고
-	46,080m ²	증)46,080m ²	신 설

4. 검토결과

○ 본 의회의견 청취안은,

평창군 봉평면 무이리 산297번지 일원에 휴양 콘도미니엄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,

○ 위 청취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,

- 관광단지(휘닉스파크)주변에 산발적으로 개발되고 있는 숙박 시설(펜션 등)에 대하여 계획대상지를 제2종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하여 기반시설의 확보와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개발하고자 하는 사안임.
- 다만 현재의 진입로가 협소(4m)하여 2종지구단위 계획 시 7m 도로를 확보하여야 하나, 일부 사유지에 대한 도로편입 토지의 매입동의를 이루어지지 않아 사업추진이 지연 또는 답보되는 상황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사업 시행자로 하여금 사전 동의절차 이행에 철저를 기할 필요가 있음.
- 주민 공람결과 제출의견은 없음.